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30일, 김준혁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7.22.)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준혁의원)

학교 인근에 신규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학생수가 증가하면 학교 체육관, 급식소 등 학교시설을 증축할 필요가 있게 됨. 학교시설을 조속히 증축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도 부족한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의 원거리 통학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학교시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청(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이 없이도 학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것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은 보다 자율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5항 후단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게 하려는 것으로 학교시설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은 2000년 7월 1일(개발제한구역법 최초 시행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만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증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학교는 지자체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 해도 받을 수가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므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교육시설은 일반 상업시설 등과는 달리 과도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꼭 필요한 체육관, 급식소 등만 증

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허용하여 줄 필요가 있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부칙 중 ‘시행한 날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함(안 부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시행한 날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부칙</u> <u>이 법은 시행한 날부</u> <u>터 시행한다.</u>	<u>부칙</u> <u>-----공포한 날부</u> <u>터-----.</u>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